

일본의 실업등급부와 재취업

윤문희 (일본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 일본의 실업등급부

일본의 실업등급부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실업이라는 사고에 대한 사후적 대처방안이다.¹⁾ 실업등급부는 실업에 처한 근로자가 실업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지급되는 구직자급부와 실업의 상태를 벗어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훈련급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그리고 고용계속이 어려운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계속급부²⁾로 나뉘어져 있다.

실업등급부 중 실제로 실업 및 재취업과 관련이 있는 급부는 구직자 급부, 취업촉진급부, 교육훈련급부로 볼 수 있다. 구직자 급부는 실업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부로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라 일반피보험자에게는 기본수당 등(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고연령피보험자에게는 고연령구직자급부, 계절적 근로자 등에 지급하는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 일용직 근로

- 1) 이 밖에 일본의 고용보험사업은 실업등급부 이외에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2사업과 피보험자가 아닌 구직자를 위하여 직업훈련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 취직 지원에 관한 법률(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구직자지원제도가 있다.
- 2) 고용계속급부는 고령자의 계속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고용계속지원급부와 육아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급부, 가족 등의 돌봄을 위하여 일을 중단하게 되는 근로자를 위한 개호(돌봄)휴직급부가 있다. 사실 고용계속급부는 근로자가 고용의 중단이라는 실업에 처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고령, 육아, 개호라는 특정 원인으로 고용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항목이다.

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근로자구직자급부(동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실업등급부는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실업이라는 상태의 구직자에게 생활 및 고용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실업등급부가 재취업에 대해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본의 실업등급부의 내용과 지급상황을 살펴본다.

■ 기본수당

일반피보험자가 실업에 처하였을 때 지급되는 일반 구직자 급부로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기능학습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본수당이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본수당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진 때에야 비로소 기능학습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본수당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정년, 도산,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離職)하고, 실업 중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요건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직한 날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을 통산하여 12개월일 것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수급자격자(도산, 사업의 축소·폐지, 해고 등에 의한 실업) 또는 특정이유실직자(기간제 근로자가 갱신을 희망하였으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직 이전 1년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기본수당의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직한 날의 익일로부터 1년간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임신 및 질병,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였던 자에 대해서는 그 일수를 가산하도록 한다(동법 제20조제1항).

공공직업안정소장은 '직업상담' 중에 재취업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훈련수당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에 소정급부일수가 종료하여도 훈련이 종료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외에(훈련연장급부, 동법 제24조), 기능습득수당으로서 안정소를 오고가는 비용(교통비, 교통수단에 맞추어 실비지급, 상한 월 42,500엔)과 수강에 필요한 '수강수당(일액 500엔, 상한 20,000

엔)이 지급된다. 훈련을 위하여 현재의 거소를 떠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숙수당으로 월 10,700엔이 지급된다(동법 제36조). 훈련 수강지시는 원칙적으로 소정급부일수 내 지급잔여 일수가 일정 정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1> 특정수급자격자와 특정이유실직자의 소정급부일수

구분 \ 피보험자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80일	-
30세 이상 35세 미만		120일 (90일*)	180일	210일	240일
35세 이상 45세 미만		150일 (90일*)		240일	270일
45세 이상 60세 미만		180일	240일	270일	330일
60세 이상 65세 미만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주 : *는 2017년 3월 31일 이전의 경우의 일수.

<표 2> 장애인 등 취업곤란자의 소정급부일수

구분 \ 피보험자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45세 미만	150일	300일			
45세 이상		360일			

<표 3> 이 외 실직자의 소정급부일수

구분 \ 피보험자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 연령	-	90일		120일	150일

<표 1>~<표 3>의 자료 : hellowork internet service(공공직업안정소 인터넷 서비스), https://www.hellowork.go.jp/insurance/insurance_benefitdays.html

기본수당 지급현황

일본 총무부가 발표한 2019년 8월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6,751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69만 명이 증가하여 8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자 수도 6,025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72만 명이 증가하여 이 또한 80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완전실업자수는 157만 명으로 2018년 8월에 비하여 13만 명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을 또한

2.2.%로 2019년 7월과 동일하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인구와 경제활동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 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감소하고 있고, 완전실업자 수와 완전실업률도 감소하는 일본은 고용 호황기를 맞고 있다.

고용상황의 호조는 실업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본수당 수급자 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2019년 8월 취업상태별 인구, 취업률 및 실업률

2019년 8월		수(만 명)	2018년 8월 대비	
			증감(만 명)	증감률(%)
인구				
	15세 이상 인구	11,091	-7	-0.1
	15~64세	7,505	-38	-0.5
취업상태				
	경제활동인구	6,908	56	0.8
	15~64세	5,992	26	0.4
	취업자	6,751	69	1.0
	15~64세	5,850	40	0.7
	가족업	536	-7	-1.3
	가족종업자	142	-2	-1.4
	고용자	6,025	72	1.2
	완전실업자	157	-13	-7.6
	15~64세	142	-14	-9.0
	비경제활동인구	4,177	-59	-1.4
	15~64세	1,508	-60	-3.8
구직자 이유별 완전실업자				
	정년 또는 고용기간의 만료	17	-4	-19.0
	근무처 또는 사업주의 사정	20	-3	-13.0
	자발적 이직	73	0	0.0
	대출 미취업	4	-2	-
	수입의 필요	16	-3	-15.8
	기타	12	-2	-14.3
[완전실업률(% , 포인트)]				
	총수	2.2	-0.2	-
[경제활동인구(% , 포인트)]				
	총수	62.3	0.6	-
	15~64세	79.8	0.7	-
[취업률(% , 포인트)]				
	총수	60.9	0.7	-
	15~64세	77.9	0.9	-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基本集計) 2019年(令和元年) 8月分(速報)」, 2019년 10월 1일 발표.

<표 5> 연간 기본수당 수급자 수

	기본수당(연장급부 제외)		
	수급자격 결정건수	최초 수급자 수	실제 수급자 수
2015년	1,491,060	1,215,502	-
2016년	1,407,765	1,126,920	-
2017년	1,345,481	1,066,849	-
2018년	1,336,476	1,055,349	-
2015년 월평균	124,255	101,292	435,563
2016년 월평균	117,314	93,910	400,746
2017년 월평균	112,123	88,904	378,344
2018년 월평균	111,373	87,946	374,762
2019년 8월 평균	99,340	97,426	416,434
2018년 8월 대비	▲ 6.9	▲ 11.1	▲ 1.0

자료: 厚生労働省, 「雇用保険事業月報·年報(2019年(令和元年)8月分)」, 2019년 10월 1일 발표.

기본수당의 연장급부

고용보험은 기본수당을 소정급부일수보다 연장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보험법이 인정하고 있는 연장급부는 총 4가지로, 개별연장급부, 훈련연장급부, 광역연장급부, 전국연장급부가 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연장급부는 개별수급자의 개별연장급부로서 난병환자인 경우,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해로 이직한 경우 등으로 중점적으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하게 된다. 소정급부일수를 넘어 기본수당을 60일간(최대 120일간) 연장하여 지급한다(동법 제24조의 2). 이외에 2017년 3월까지 개별연장급부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현재는 지역연장급부(동법 부칙 제5조)로 변경된 것이 있다. 이 때문에 통계에서는 2017년 시점 이후로 지역연장급부로 계산하지만, 통계항목으로는 개별연장급부에 산입하여 표기하고 있다. 지역연장급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가 45세 미만의 구직자로 안정적인 직업의 경험이 적고, 실직이나 전직을 반복하고 있는 자이거나, 지정지역(유효구직자비율이 2009년 1월 시점의 해당하는 비율이 전국평균 이상, 해당지역의 유효구인배율이 2009년 1월 시점 해당 비율의 전국 평균 이하, 고용보험의 기본수급률이 2009년 1월 시점 전국평균 이하)에 거주하는 구직자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지역연장

급부는 2022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개별연장급부의 내용 중 지역연장급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이 개별연장급부의 수급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광역연장급부와 전국연장급부가 있다. 이는 고용상황의 악화를 원인으로 후생노동대신(한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지역(고용상황 악화지역)³⁾에서는 구직활동에 한계가 있어, 그 지역을 넘어 광역적 범위에서 직업소개에 의하여 직업의 알선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한 때에 연장이 인정된다. 기본수당은 90일간을 연장하여 지급한다(동법 제25조). 실업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4일 연속하여 기본수당의 수급률이 각각 4%를 넘고 최초수급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90일을 한도로 소정급부일수를 넘어서 기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국연장급부(제27조)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산, 해고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직하게 된 자가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중점적으로 재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넘어서 기본수당이 60일이 연장된다. 이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조치이다(동법 부칙 제5조).

훈련연장급부(동법 제24조)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훈련을 지시하여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때에 발생하며, 훈련종료까지 사이의 소정급부일수를 넘은 기간에 대해서 기본수당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장급부의 지급현황은 <표 6>과 같다. 연장급부 중 개별연장급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200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일명 리먼 쇼크)로 인한 고용상황의 악화와 2011년 토호쿠지역의 대지진 및 2016년의 쿠마모토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한 악재가 거듭되었던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따라 개별 연장급부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어 개별연장급부 지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11일 발생)의 재난지 중 특히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그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여도 취업이 곤란한 지역으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이 지정되었다. 이외에 2016년 9월 9일 쿠마모토현 등이 지정되었다(2016년 지진으로 인해).

<표 6> 연장급부 항목별 지급현황

(단위: 명, 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초회 지급 수	수급자 실인원	수급 종료자 수	지급금액	초회 지급 수	수급자 실인원	수급 종료자 수	지급금액
	2017년				2016년			
개별연장급부 (지역연장급부포함)	29,646	7,350	30,290	9,251,055,692	57,529	12,935	48,494	15,776,833,189
훈련연장급부	67,932	16,628	56,009	25,291,646,557	69,824	17,207	58,521	25,800,843,478
대기수당	8	1		158,420	11	1		515,168
종료후수당	12,142	1,699	10,257	1,625,915,980	11,346	1,548	8,990	1,446,220,556
광역연장급부	145	60	195	57,205,368	278	55	76	52,859,160
전국연장급부	0	0	0	0	0	0	0	0
	2015년				2014년			
개별연장급부 (지역연장급부포함)	67,762	15,239	57,525	18,614,111,432	100,905	23,126	89,776	27,424,655,747
훈련연장급부	65,151	16,739	61,237	25,563,113,458	66,584	17,496	63,542	26,811,869,603
대기수당	10	1		942,083	13	2		1,005,083
종료후수당	3,499	475	2,909	438,940,006	3,698	520	3,069	469,791,911
광역연장급부	0	0	0	0	0	0	0	15,302
전국연장급부	0	0	0	0	0	0	0	0

주 : 1) 개별연장급부 가운데 2017년도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부 및 지역연장급부를 집계한 것임.

2017년 4월부터 지역연장급부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지급은 지역연장급부로 대체되었음.

자료: 厚生労働省, 「雇用保険事業年報」, 2014, 2015, 2016, 2017 각 연도 재구성.

광역연장급부가 2016년 및 2017년에 증가한 것은 2016년에 정부가 쿠마모토 대지진으로 2016년 9월에 쿠마모토지역을 광역연장급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 취업촉진급부

고용보험의 실업등급부의 취업촉진급부는 고용보험법 제53조 제53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취업촉진급부는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재취업수당, 취업촉진정착수당, 취업수당 등이 있고, 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가 종료하기 전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재취업수당

재취업수당은 기본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나 사업주가 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지급된다. 요건으로는 기본수당의 지급잔여일수(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의 잔여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경우이다.

소정급부일수가 2/3 이상인 경우 지급잔여일수의 70%(2017년 1월 1일 이전은 60%)
소정급부일수가 1/3 이상 2/3 미만인 경우 지급잔여일수의 60%(2017년 1월 1일 이전은 50%)

취업촉진정착수당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취업처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재취업처의 6개월간 임금이 실직 전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된다.

기본수당 지급잔여일수의 40%(재취업수당의 급부율이 70%인 경우는 30%)를 상한으로 하고, 저하한 임금(실직 전 임금일액에서 재취업 후 임금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실직 전 임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⁴⁾

취업수당

취업수당은 기본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안 되는 상용고용 등 이외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에 기본수당의 지급잔여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4) 2019년 8월 1일 현재 30세 미만은 13,630엔, 30세 이상 45세 미만은 15,140엔, 45세 이상 60세 미만은 16,670,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15,890엔이고, 하한액은 2,500엔이다. 지급액의 상한액은 60세 미만인 자는 6,165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4,990엔이다.

45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취업일×30%×기본수당일액이다.

상용취업지원수당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격자(장애가 있는 자), 4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등에 기초하여 재취업원조계획의 대상 등이 공공직업안정소 또는 민간직업소개업자의 소개로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기본수당일액에 36일(지급잔여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잔여일수 또는 45일 중 더 많은 일수×4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표 7> 취업촉진급부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 엔)

	취업수당		재취업수당		상용취업지원수당		취업촉진급부 지급총액
	실제 수급자 수	지급금액	실제 수급자 수	지급금액	실제 수급자 수	지급금액	
2015년	-	849	405,715	125,156	9,734	1,047	153,051
2016년	-	720	404,977	127,696	9,395	1,026	153,040
2017년	-	595	409,886	150,406	3,459	487	170,101
2018년	-	-	419,417	-	3,107	-	-
2015년 월평균	1,602	83	33,810	9,759	811	97	10,879
2016년 월평균	1,343	71	33,748	10,430	783	87	12,754
2017년 월평균	1,101	60	34,157	10,641	288	86	12,753
2018년 월평균	937	-	34,951	-	259	-	-
2019년 8월 평균	1,130	54	37,937	14,776	203	30	16,132
2018년 8월 대비	▲ 3.8	▲ 2.9	▲ 2.6	0.3	▲ 9.8	▲ 13.1	0.3

자료: 厚生労働省, 「雇用保険事業月報·年報(2019年(令和元年)8月分)」, 2019년 10월 1일 발표.

■ 교육훈련

실업등급부 중 구직자의 재취업과 가장 밀접하게 이어지는 것은 교육훈련급부이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자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비용의 일부를 정률로 지급한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부금은 일반교육훈련급부금, 전문실천교육훈련급부금, 잠정조치인 교육훈련지원급부금

의 청년 이직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중의 수강지원으로서 기본수당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수강 중 2개월 동안 지급한다.

특정일반교육훈련급부금

일반교육훈련급부 중 경력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IT 기술 등의 강좌를 대상으로 급부율을 40%로 배가시키고, 상한도 20만 엔으로 하여 지급되는 새로운 급부금이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표 8> 특정일반교육훈련급부금이 지급되는 강좌

(1) 업무독점자격, 명칭독점자격 또는 반드시 면허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성과정 자격 또는 이들의 자격취득을 훈련목표로 하는 과정	146
(2)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자격 가운데 ITSS레벨 2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정보기술자시험 등)	3
(3) 새로운 IT패스포트 시험합격목표강좌(2019년 4월 1일 이후 실시된 해당 시험의 합격을 훈련목표로 하는 과정만)	-
(4) 단시간 경력형성 촉진프로그램 및 직업실천육성프로그램(특별과정(교육))	1

지정강좌로는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한국의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취득을 훈련목표로 하는 과정, 개호직원초임자 연수 등으로 실제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강좌로 아직 그 효과를 알 수 없으나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취업이 기대된다.

교육훈련과 재취업효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폴리텍센터), 지방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교), 민간교육위탁훈련기관(도도부현⁵⁾으로부터 위탁) 등이 있다.

5)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자체 단위이다.

국가의 폴리텍센터는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중소기업 등의 재직자 직업훈련 및 인재양성작업을 한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실시하며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 금속가공과나 주거환경계획과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직업능력개발교는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도부현별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다.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주로 목공과나 자동차정비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이 있는데 이는 도도부현이 훈련을 위탁한 것으로 사무계, 개호(돌봄), 정보계 등 간이한 훈련을 실시한다.

<표 9> 공공직업훈련의 실시상황

(단위 : 명, %)

		합계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		도도부현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2018	이직자훈련	82,440	-	20,026	-	62,414	-
	시설 내	26,304	84.6	20,026	85.4	6,278	77.9
	위탁	56,136	72.7	-	-	56,136	72.7
2017	이직자훈련	88,759	-	21,533	-	67,226	-
	시설 내	27,716	85.2	20,740	85.8	6,976	80.1
	위탁	61,043	73.2	793	86.6	60,250	72.8
2016	이직자훈련	92,538	-	21,702	-	70,836	-
	시설 내	28,857	84.1	21,179	84.8	7,678	77.8
	위탁	63,681	72.4	523	78.2	63,158	72.3
2015	이직자훈련	97,538	-	22,264	-	75,274	-
	시설 내	29,645	83.7	21,925	84.5	7,720	77.3
	위탁	67,893	74.0	339	82.6	67,554	73.9

주: 1) 각 연도의 수강자 수는 매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임.

2) 취업률은 시설 내 훈련은 매년 8월 말까지, 위탁은 매년 7월 말까지 훈련을 종료한 자의 3개월 후의 취업상황임. 다만 2015년의 취업상황은 시설 내가 2015년 8월 말, 위탁은 2015년 7월 말 이후 3개월 후의 취업상황임.

3) 도도부현이 자치사무로 행하는 시설 내 훈련 및 도도부현 단독의 위탁훈련 실적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厚生労働省, 「公共職業訓練と求職者支援訓練の実施状況について」, 각 연도 재구성.

<표 10> 2018년 공공직업훈련(실직자훈련) 분야별 취업상황

(단위 : 명, %)

분야별	수강자 수 (합계)	시설 내 훈련						위탁훈련					
		합계		고령·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		도도부현		합계		고령·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		도도부현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수강자 수	취업률
농업·임업 계	866	527	94.7	-	-	527	94.7	339	50.0	-	-	339	50.0
건설 계	4,946	4,759	83.4	3,68	83.5	1,074	81.4	187	100	-	-	187	100
제조 계	9,728	9,498	86.7	8,063	86.7	1,435	86.2	230	91.3	-	-	230	91.3
사무 계	25,844	616	84.9	446	84.8	170	85.7	25,228	72.6	-	-	25,228	72.6
정보 계	15,001	288	82.8	47	87.0	241	80.5	14,713	69.9	-	-	14,713	69.9
서비스 계	12,770	8,063	83.7	6,206	84.9	1,875	74.1	4,707	54.2	-	-	4,707	54.2
개호 계	10,008	837	82.3	-	-	837	82.2	9,171	85.4	-	-	9,171	85.4
기타	32,77	1,716	4.3	1,579	-	137	4.3	1,561	68.9	-	-	1,561	68.9
총계	82,440	26,304	84.6	20,026	85.4	6,278	77.9	56,136	72.7	-	-	56,136	72.7

<표 11> 고용형태 및 교육 관련 취업자 비율

(단위 : %)

	시설 내 훈련	위탁훈련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	76.5	54.8
교육훈련 수강내용과 관련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	75.3	69.3

자료 : 厚生労働省(2019), 「平成30年度公共職業訓練と求職者支援訓練の実施状況について」, p.2.

<표 9>의 내용은 이러한 기관이 실시한 이직자 대상 훈련의 수강자 수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직업훈련 수강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위탁수강 비율이 시설 내 훈련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국가 및 도도부현이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교육훈련은 국가 및 도도부현이 맡아서 하지만, 사무직 등의 부담이 적은 것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표 10>과 같이 훈련자의 취업률은 70%를 웃도는 등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이들의 분야별로 받은 직업훈련수강자의 취업률을 보면 분야를 불문하고 대체로 취업률

은 높게 나타난다. 다만, 시설 내 훈련과 위탁훈련의 경우에 취업률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설 내 훈련이, 그리고 시설 내 훈련 중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에 실시한 교육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취업자 수의 비율도 시설 내 훈련의 경우가 76.5%로 위탁훈련의 54.8%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훈련 수강내용과 관련한 취업자 수의 비율도 시설 내 훈련이 75.3%로 위탁훈련의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도부현의 위탁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업체의 평가가 적정한 훈련인가에 대해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취업률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⁶⁾

■ 실업등급부와 취업률에 대한 재검토

앞서 살펴본 실업등급부의 각 내용에 관한 통계만으로 일본의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취업촉진급부를 통하여 기본수당을 수급받는 중에 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가 종료되기 전 취업한 구직자를 추정하여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 원인이 취업촉진급부의 독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교육훈련급부를 대상으로만 수강자 수와 취업률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탁에 의한 훈련보다 도도부현 또는 국가가 실시하는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에 의한 교육훈련의 취업률이 더 높고, 취업의 질(기간의 정함이 없는 취업률),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자 교육훈련급부를 받은 자의 취업률은 <표 10>,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75%를 상회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교육훈련급부만을 놓고 보았을 때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이 재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6) 교육위탁을 하는 민간기관에 지급하는 구직자지원의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장려금(求職者支援訓練の訓練実施機関に対する奨励金)은 기본장려금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출석률을, 그리고 추가부가금에 대해서는 취업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표 12> 기본수당수급자와 교육훈련급부금 수급자 및 취업촉진급부의 수급자 수

(단위:명)

	기본수당(연장급부 제외)		훈련연장 급부 실질인원	교육훈련급부			취업촉진급부	
	수급자격 결정건수	실제 수급자 수		일반교육	전문 실천교육	실직자 훈련수급자	취업수당	재취업수당
2015년	1,215,502	-	16,739	120,117	6,640	97,538(75,043)	-	405,715
2016년	1,126,920	-	17,207	111,790	20,874	92,538(70,483)	-	404,977
2017년	1,066,849	-	16,628	99,978	38,781	88,759(68,297)	-	409,886
2018년	1,055,349	-	-	92,571	58,486	82,440(63,064)	-	419,417
2015년 월평균	101,292	435,563	-	10,010	553	-	1,602	33,810
2016년 월평균	93,910	400,746	-	9,316	1,740	-	1,343	33,748
2017년 월평균	88,904	378,344	-	8,332	3,232	-	1,101	34,157
2018년 월평균	87,946	374,762	-	7,714	4,874	-	937	34,951
2019년 8월	97,426	416,434	-	8,802	1,890	-	1,130	37,937
2018년 8월 대비	▲ 11.1	▲ 1.0	-	▲ 1.7	252	-	▲ 3.8	▲ 2.6

주:()는 훈련수급자 수 중 취업자 수.

자료:厚生労働省,「雇用保険事業月報・年報(2019年(令和元年)8月分)」, 2019년 10월 1일 발표.

에서, 교육훈련에 의하여 기본수당의 훈련연장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보다 교육훈련에 충실할 수 있어 재취업에 훈련연장급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교육훈련급부의 강화개설을 위한 정확한 노동시장의 예측과 이에 따른 강좌 개설,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수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LI**